

법무부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 서 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 범죄피해재산의 몰수·환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4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부절차에 따르는 공고(안 제3조) 및 각종 통지(별지 제1호·제5호·제9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환부청구서(안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 환부결정서(안 제6조,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안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안 제9조,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 환부 관리부 작성·비치 규정 및 그 서식(안 제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환부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의무(안 제5조) 및 그 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대검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영 제2조 제4호의 통지·공고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통지,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2. 전호 비용 외에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공고 등) ① 영 제5조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식에 의한다.

③ 영 제5조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영 제6조 제2항 제4호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인이 청구한 때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환부 청구인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영 제6조 제2항의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청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신고)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복대상 재산 환부 결정이 있기 전 까지 변경사항을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영 제7조 제2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2. 청구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청구인이 법인 등인 때에는 그 법인 등의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고 한다)]
3.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청구일자 및 결정일자
5. 결정의 결과 및 그 이유

② 영 제7조 제4항의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 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담당자가 피해자 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한 「범죄피해재산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이를 범죄피해재산환부 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영 제10조 제1항의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1.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2.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신청인이 법인 등인 때에는 그 법인 등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록번호)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4. 결정의 내용 및 연월일
5. 이의신청의 사유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영 제10조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1.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2. 이의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등록번호
3.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이의신청의 내용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내용

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

7. 이의신청 및 결정의 연월일

② 영 제10조 제3항의 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영 제11조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 지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심의회의 간사로서 심의회에 참여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를 운영하는 각 검찰청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지청
(전화번호)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수신자 :

제 목 : 회복대상재산 보관 통지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위해 회복대상재산을 보관 중이므로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 금전 외 재산(환가여부:) : (가액 : 원)
 - 금전 : 원
3. 몰수재판 또는 추정재판을 한 법원 등
 - 선고법원 :
 - 재판 연월일 및 확정일 :
 - 법원 사건번호 :
 - 피고인 성명 :
 - 몰수 또는 추정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및 죄명 :
4. 청구 기간 : 본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찰청 ○○지청

검사 (인)

유의사항

1.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2.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청 구 인	성명(명칭)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휴대전화) :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청구인이 포괄승계인인 경우	피해자의 성명 :		
	승계사유 및 연월일 : 년 월 일 로 인하여 승계함		
대 리 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휴대전화) : 전자우편:		
범죄피해재산 및 환부청구재산	범죄피해재 산 ㉠	금전 외 재산 : (가액 : 원)	
		금전 : 원	
	공제금액 ㉡	반환 또는 배상의 연월일	반환 또는 배상액
		.	원
		.	원
		공제대상합계액	원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 : _____ (원)		
지급받을 계좌	계좌 명의자 : 은행명 :		
	계좌번호 :		
첨부 서류 1. 청구인이 피해자(승계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예: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2.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할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3. 재산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할 자료(예: 판결문, 배당내역, 합의서, 입금내역) 4.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예: 환부 청구인의 통장사본, 계좌거래확인서) 위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 (인)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검사장
청구일자			결정일자		
청 구 인	성 명 (명 칭)				차장검사
	생년월일 (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결정주문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인용한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기각한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각하한다. ○ 피해인정재산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 결정이유 (상세한 이유 별지 기재) －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예시 : . . . 에 지급받은 금_____원 확인)					부장검사
○ ○ 검 찰 청 ○ ○ 지 청 검사 (인)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 통지서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청 구 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주문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인용한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기각한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각하한다.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		
결정이유	☒ 청구 사항에 대한 소명 부족 ☐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예시 : . . . 에 지급받은 금_____원 확인) ☐ 기타 사유()		
.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복대상재산에서 필요비용을 제하고,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피해자등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검 찰 청 ○ ○ 지 청 검사 (인)			

범죄피해재산환부관리부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회복대상재산 및 비용			최초 액수 ㉠ : 원		추가 액수 ㉡ : 원		
			절차비용 공제액 ㉢ : 원		총 금액(㉠+㉡-㉢) : 원		
연번	청구인(피해자등)		범죄피해재산 환부결정			환부(지급)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결정일자	결정결과 ①범죄피해재산 ②환부청구재산 ③피해인정재산	환부(지급)일자	환부재산(가액) 또는 피해회복금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총 피해인정재산(액)			총 환부액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	
결정연월일				
결정 내용		☐ 환부 청구 기각 ☐ 환부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원] ☐ 환부 청구 각하		
이의사유				
첨부서류 - 이의신청인이 환부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예: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 환부 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 기타 이의신청 관련 자료 위와 같이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인 : (인)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이의 신청 내용			
결정 주문	☐ 이의신청 인용 ☐ 이의신청 기각 ☐ 이의신청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 이의신청 각하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		
결정 이유	(상세한 이유 별지 기재)		
OO검찰청 OO지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 주문	☐ 이의신청 인용 ☐ 이의신청 기각 ☐ 이의신청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 이의신청 각하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		
결정 이유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직인)			